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인·장애인 수용시설의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면제〉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88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홍배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2. 11.
3. 회 부 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그 대상시설의 범위에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장기간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 건축 구조나 부지 여건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전공간 확보 및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화재 대응·대피에 취약한 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대상에서 합리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서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 ----- ----- ----- ----- ----- ----- -----.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다만, <u>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u> <u>가.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u> <u>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u>

현행	개정안
2. ~ 4. (생략) ② ~ ⑫ (생략)	<u>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u>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⑫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하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함.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 화재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화재발생시 화재진화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①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로서 ②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임.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체 화재 중 주차·충전 중 화재율이 44.6%로 내연기관차 대비 1.68배에 달하며¹⁾ 화재발생시 배터리 열폭주 현상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점²⁾을 고려하여,

1) 소방청 보도자료, 「소방청, 본격 나들이철 차량화재 주의 당부」, 2024.4.

2) Fire Technology, 「A Review of Battery Fires in Electric Vehicles」, 2020.1.

화재대피가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이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①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은 「건축법」상 기준에 따를 때 ㉠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과 ㉡ 의료시설로 구분됨³⁾.

3)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24. 국방·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26. 발전시설
27. 묘지 관련 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중 ㉔ 노유자시설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로 열거하지 않음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를 때에도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등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받지 아니함.

다음으로 ㉕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로 열거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시설이 병원이나 격리병원 등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경우⁵⁾ 소유자는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등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받음.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시설
- 마. 운수시설
- 바. 의료시설
- 사. 교육연구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 타. 자동차 관련 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발전시설
- 거. 관광 휴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의료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⁶⁾ 및 동 시행령⁷⁾에 따라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규범상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에 해당하기 어려움.

산업통상부는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 ㉔ 노유자시설의 경우 개정안 입법에 따른 차이가 없고, ㉓ 의료시설의 경우 ① 개정안 제11조의2제1호가목과 ② 나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어서 개정안 입법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므로, 논의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상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7. 의료시설

문 의 처
02)6788-5460